

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
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472,681,102	14,180,433
1. 일반회계	464,880,723	13,946,422
2. 특별회계	7,800,379	234,011
의료급여기금	971,385	29,142
주차장	5,463,903	163,917
주거환경개선사업	384,577	11,53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44,800	7,344
지하수관리	735,714	22,071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913,18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
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